

의안번호	2200209
의 퇴 인	박정 의원
회 답 일	2024.8.29.
추 계 번호	24B06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86억원, 2030년 438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60억원(연평균 41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안 제33조제3항)	386	399	412	425	438	2,060	412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용도)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제1항)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의무규정
3	안 제33조제3항(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저임금액의 <u>100분의 80</u>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함(제3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용도) 제5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1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용도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범안이 아님
3	안 제33조제3항(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 개정안의 조항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공과금을 말함²⁾

- (제도개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해 소요되는 금액을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환산한 금액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부담기초액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4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현행법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약 60% 수준에서 결정됨³⁾

[표 2] 2024년 기준 부담기초액

(단위: 원)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 이상 ($i=1$, A)	1/2이상 3/4미만 ($i=2$, B)	1/4이상 1/2미만 ($i=3$, C)	1/4미만 ($i=4$, D)	장애인고용률 0% ($i=5$, E)
부담 기초액	1,237,000 (A/E = 60.0%)	1,311,220 (B/E = 63.6%)	1,484,400 (C/E = 72.0%)	1,731,800 (D/E = 84.0%)	2,060,740 (월 최저임금액)

주: 1.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3.1.1.~2023.12.31.
 2. 비율에 따른 인원내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7호

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표 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2020~2024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담기초액	1,078,000원	1,094,000원	1,149,000원	1,207,000원	1,237,000원

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자료: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8호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9호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9호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7호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1호

- (납부실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3년 납부 실적은 약 9,175억원임
 - 이 중 정부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무원 1,365억원, 비공무원 87억원으로 나뉨

[표 4]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정부	공무원	비대상	48,595	53,520	72,232	136,501
	비공무원	8,890	7,245	6,144	7,669	8,693
공공기관		32,701	33,374	26,478	34,891	27,985
민간기업		732,646	690,495	690,784	743,766	744,340
합계		774,237	779,709	776,926	858,559	917,51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임
-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는 ①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인상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이하 수입 증가분)과 ②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가액(이하 지출 증가분)으로 구성됨
 - (수입 증가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⁴⁾에 계상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수입 증가분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법정부담금의 증가분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법정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4) 사업코드: 59-59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 (지출증가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의 변화 중 지출 증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증가분임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에 미달하여 장애인(장애인공무원 포함)을 고용할 경우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해야하므로⁵⁾,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게 됨
 -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액도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되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⁶⁾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음
 - 지출증가분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본 추계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인상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의 증가액에 대해 산출
 -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최근 납부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며, 현행법에 따른 감면 규정(교육감 50% 감면, 일시납 3% 감면 등)이 적용된 실제 수납액은 1,365억원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에 따른 감면(교육감 50% 감면) 규정과 시행령 제38조제4항⁷⁾에 따른 일시납 할인(3%)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중 교육감 50%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2006년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 유효기간을 두어 해당 조항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⁸⁾

5) 고용노동부, 「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2024.

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②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8) 「법률 제1450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 이후 2021년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로, 2024년 이후에는 ‘3.8%’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를 통해 교육청의 경우 동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경우 시행일(2021년 7월 20일)부터 3년간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함⁹⁾

[표 5]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공무원)

(단위: 백만원)

	국가기관 (A)	지자체 (B)	(C)	교육감			합계 (D=A+B+C)
				발생액	교육청 2분의 1 감면	일시납공제	
2021년	9,445	3,581	40,493	83,177	41,588	1,095	53,519
2022년	14,417	8,509	49,306	109,310	58,479	1,525	72,232
2023년	17,632	11,217	107,652	118,261	7,280	3,329	136,501

주: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2020년도부터 적용

2.교육청 부담금 감면: 2021, 2022년 발생부담금 총액의 1/2 감면 적용, 2022, 2023년 의무고용률 상승(3.4%→3.6%)으로 추가발생한 부담금액의 1/2감면 적용

자료: 고용노동부

- 장래에 발생할 실제 장애인공무원의 고용현황 및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 규모,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지출액이 상향 조정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따른 행태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6항, 제33조제8항·제9항, 제3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시행 2020.1.1.)

9)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및 부담기초액에 대한 부담금 수입과 지출은 2026년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¹⁰⁾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¹¹⁾을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로서 지출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의미하며,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고용에 따른 재정지출액으로 구성
- 공무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기초액과 현행 기준 부담기초액의 차이”에 장애인고용률 구간별 의무고용률 대비 미고용인원(이하 “미고용인원”)을 적용하여 산출
 - (부담기초액의 차이)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부담기초액은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에서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부담기초액을 차감하여 산출

10)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해당연도 부담금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므로 t 년도 부담금 수입은 $t-1$ 년도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2024년 7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최저임금상승률	1.7	3.2	3.2	3.2	3.2

- (현행)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 최저임금과 동일하므로, 이 구간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를 제외한 장애인고용률이 1/2 이상 3/4 미만인 경우($i=2$)와 1/4 이상 1/2 미만인 경우($i=3$), 1/4 미만인 경우($i=4$) 등은 2023년 현재 기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 대비 부담기초액의 비중을 준용하여 산출
- (개정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담기초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인상(최저임금액의 60→80%)을 고려하여 산출
- 장애인고용률 3/4 이상인 경우($i=1$)의 부담기초액은 개정안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는 100%를 반영
- 위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률 3/4 이상인 경우($i=1$) 대비 구간별 부담기초액 비중의 차이를 고려하여 산출
- 향후 구간별 부담기초액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현재의 구간별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6]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산출

장애인고용률 구간	현행		개정안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A)	1구간과의 차이 (B=A-60.0%)	개정조항을 고려한 가중치 (C=0.5×B)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D=80%+C)
$i=1$	60.0%	—	—	80.0%
$i=2$	63.6%	3.6%p	1.8%	81.8%
$i=3$	72.0%	12.0%p	6.0%	86.0%
$i=4$	84.0%	24.0%p	12.0%	92.0%
$i=5$	100.0%	—	—	100.0%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인상 정도를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액과 구간별 부담기초액의 차이를 산출

[표 7] 개정안에 따른 월 부담기초액: 2026~2030년

(단위: 원)

	장애인고용률 구간	2026	2027	2028	2029	2030
현 행 (A)	$i=1$	1,298,696	1,340,325	1,383,593	1,427,859	1,472,753
	$i=2$	1,376,618	1,420,745	1,466,609	1,513,531	1,561,119
	$i=3$	1,558,435	1,608,390	1,660,312	1,713,431	1,767,304
	$i=4$	1,818,175	1,876,455	1,937,030	1,999,003	2,061,855
	$i=5$	2,163,521	2,232,871	2,304,952	2,378,696	2,453,486
개정안 (B)	$i=1$	1,730,817	1,786,297	1,843,962	1,902,957	1,962,788
	$i=2$	1,769,778	1,826,507	1,885,469	1,945,793	2,006,971
	$i=3$	1,860,686	1,920,329	1,982,321	2,045,743	2,110,064
	$i=4$	1,990,556	2,054,362	2,120,680	2,188,529	2,257,339
	$i=5$	2,163,521	2,232,871	2,304,952	2,378,696	2,453,486
차이 (C=B-A)	$i=1$	432,120	445,972	460,369	475,097	490,035
	$i=2$	393,160	405,762	418,861	432,262	445,853
	$i=3$	302,251	311,939	322,009	332,311	342,760
	$i=4$	172,381	177,907	183,650	189,526	195,484
	$i=5$	0	0	0	0	0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고용인원) 2023년 결산 기준 미고용인원이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2023년 결산 기준 장애인 미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추가재정소요이므로, 향후 추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표 8] 장애인 미고용인원(공무원)

(단위: 명)

장애인고용률 구간	2023년 결산 기준
$i=1$	542
$i=2$	3,988
$i=3$	4,055
$i=4$	0
$i=5$	1

주: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지출 증가액”으로 개정안에 따른 월 부담기초액 차이를 적용하여 산출

$$- \text{추가재정소요} = \text{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 \times 12\text{개월} \times \text{미고용인원}^{12)}$$

[표 9] 월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추가 재정 소요	$i=1$	2,811	2,901	2,994	3,090	3,187
	$i=2$	18,815	19,418	20,045	20,686	21,337
	$i=3$	14,708	15,179	15,669	16,170	16,679
	$i=4$	0	0	0	0	0
	$i=5$	0	0	0	0	0
합계		36,333	37,498	38,708	39,947	41,203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공무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기준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액(1,365억원) 대비 비공무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발생액(87억원)의 비중(6.4%)을 적용하여 산출

[표 10]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	공무원	363	375	387	399	412
	비공무원	23	24	25	25	26
	소계	386	399	412	425	43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86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2,060억원으로 추계됨

12) 2023년 결산 기준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안 제33조제3항)	386	399	412	425	438	2,060	41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현행법에 따른 감면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이며, 주요 전제가 달라질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에서의 미고용인원은 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 되었으므로 장래에 발생한 미고용인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현재의 구간별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구간별 부담기초액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